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14 발의연월일: 2020. 11. 20.

발 의 자:이종성・임이자・김형동

강기윤 · 김성원 · 정희용

권명호 • 권성동 • 정동만

정운천 · 윤창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함)을 할 수 있음.

그런데 현재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 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10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739호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10(인증운영기관의 설치)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있다.

- 1. 인증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
- 2. 인증 관련 연구·개발 및 기술 보급
- 3.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
- 4.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- 5.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739호	법률 제16739호
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	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
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	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<u><신 설></u>	제10조의10(인증운영기관의 설치)
	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
	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
	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
	운영할 수 있다.
	1. 인증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
	<u>원</u>
	2. 인증 관련 연구·개발 및 기
	술 보급
	3.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
	<u>및 운영</u>
	4.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
	교육
	5.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
	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	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
	<u>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을 그</u>
	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
	설을 갖춘 기관 또는 장애인

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
의 설치・운영 및 제2항에 따
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
공동부령으로 정한다.